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
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19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8.

발 의 자 : 김선교 · 김성원 · 김상훈  
안철수 · 김위상 · 구자근  
최수진 · 김소희 · 윤상현  
정동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, 「경관법」에 따른 경관 심의 사항 등 통합심의 대상 사항을 규정하면서 해당 사항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(이하 “통합심의”라 함)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 덧붙여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통합심의회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심의 사항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통합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통합심의회와 관련된 서류제출 관련 규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“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”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합심의회가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필요한 절차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

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문구를 조정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의2제2항).

법률 제 호

##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의2제2항 전단 중 “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”를 “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0조의2(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심의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/u> 이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50조의2(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심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</u>-----.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